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82
----------	---------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13일

발 의 자: 최동철, 김병진, 김현희, 강선영,  
신낙형, 정정희, 김성한, 이충숙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용도가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세출규정에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규정 신설(안 제4조)
- 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안 부칙)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
- 나. 협조부서: 주차관리과
- 다. 입법예고: 2021. 8. 17. ~ 8. 22.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1. <u>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u></p> <p>2. ~ 9. (생략)</p>	<p>제4조(세출) -----</p> <p>-----</p> <p>----.</p> <p>1. <u>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u></p> <p>2. ~ 9. (현행과 같음)</p>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2018. 12. 18., 2020. 6. 9., 2021. 1. 12.>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 12.>
- [전문개정 2010. 3. 22.]